



대구대학교  
DAEGU UNIVERSITY



# 업무협약서

한국장학재단과 대구대학교는 대구·경북 지역 대학(원)생 창업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 (목적)** 본 협약은 대구·경북 지역의 대학(원)생 창업 인재 육성과 대학(원)생 창업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정책적 지원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기본원칙)**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상대 기관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협조한다.

**제3조 (협력사항)**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 하기로 한다.

1. 대구·경북 지역의 우수 대학(원)생 창업 인재 발굴 및 육성 지원
2. 대학(원)생 창업 지원을 위한 보육 인프라 지원
3. 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연계
4. 대학(원)생 창업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
5. 그 밖에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**제4조 (비밀 유지)** 양 기관은 상호 협력 또는 교류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.

**제5조 (협약 기간)**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. 다만,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3년씩 자동 연장된다.

**제6조 (효력 발생)**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**제7조 (기타사항)**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한 바에 따른다.

본 협약의 체결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9월 10일



대구대학교  
DAEGU UNIVERSITY

총장

박 순 진 (인)



이사장

배 병 일 (인)

